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결 정

사 건 밀양·청도 송전탑건설 사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 음

1. 위 사건(이하 ‘본 사건’ 이라 한다)의 요지는 경남 울주군에 있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이하 ‘신고리원전’ 이라 한다)에서 생산할 전력을 경남 창원군에 있는 북경남변전소로 수송하기 위해 경남 밀양시 단장·산외·상동·부북·청도 5개면 일원에 765kV급 신고리원전-북경남변전소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과정과 경북 청도군 풍각·각북 2개면 일원에 위 북경남변전소에서 바로 이어지는 345kV급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에 관한 정보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문제, 건강권 및 재산권 침해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이 있었으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이라 한다)가 공사 강행 및 완공을 위하여 농성장 철거 및 행정대집행 등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력이 투입되어 반대주민 등에 대한 인권침해, 과도한 통행제한, 주민들에 대한 사찰 및 회유 그리고 비인도적 조치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2.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본 사건에 있어서 ① 한전의 송전탑 건설사업 과정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운동 배경과 쟁점, ② 공사재개, 행정대집행 등 과정에서 송전탑 반대운동에 대한 경찰 대응의 적정성 여부, ③ 송전탑 건설사업 과정에서 경찰의 역할과 대응의 적정성 여부 ④ 본 사건으로 인하여 밀양·청도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겪고 있는지 여부, ⑤ 본 사건에 따른 주민 등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 경찰의 자체 조사 및 감찰, 포상 등에 관하여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첨부와 같이 심사하였

다.

3. 위원회는 첨부된 심사결과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그리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등을 위하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제17조) 경찰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가.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본 사건 심사결과(밀양·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에 대한 불법사찰·특별관리·회유 등으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을 가중시키고, 송전탑 공사반대를 막기 위해 과도한 공권력 투입 등으로 인권을 침해한 사실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

나. 경찰은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다. 경찰은 주민들에 대한 불법사찰, 회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보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라.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가 규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확대해석하여 국민의 일반적 통행권을 원천 차단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마. 경찰은 집회·시위에서 장소의 특성, 시위 형태, 용품 등 사고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바. 경찰은 채증을 위한 촬영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채증을 위한 촬영이 불법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그 직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도록 경찰청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여 촬영행위의 요건

과 방식 등을 제한할 것.

4. 본 사건의 핵심은 한전의 송전탑 건설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인권(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로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위원회는 정부에 대하여 향후 본 사건과 같은 공공갈등의 재발과 이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①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국내적으로 실행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고, ② 인근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신체적 건강 피해에 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첨부 : 본 사건 심사결과